

Ⓣ140-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-75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****/전송(02)790-8911
정책보험국장 최윤배(6530)/ 보험팀장 김기성(6571)/ 담당 김윤아(6581)/ E-mail: stephania82@nate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321호

시행일자 2015. 6. 19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**중동호흡기증후군(MERS) 관련 특정 감염전문관리료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변경 안내**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 근거 : 가.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3386호(2015.6.18.)

나. 대의협 제813-304호(2015.6.17.)

3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(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, MERS)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특정 감염전문관리료 산정에 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하여 온 바, 이를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적용수가

-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」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‘가-8 협의진찰료’의 소정점수로 산정(모든 종별 요양기관에 적용,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‘4’로 기재)

나. 산정방법

- 격리 입원 1일당 1회를 산정하며, 이 경우 감염전문관리료(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‘2’로 기재)와 안심병원 감염전문관리료(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‘3’으로 기재)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

붙 임 : 메르스 관련 확진 및 의심환자 격리입원에 따른 특정 감염전문관리료 산정기준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



“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”

수신처 : 각 시도지사회장, 각 학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